



선 람	기관의 장

제1762호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공 고

- | | | | |
|-----------------|--|-----------|---|
| ○ 공 고 제 5 4 4 호 | 보상계획 열람공고[고잔동 379-24번지 일원 소로 1-10 호선 도로개설공사] | 도 로 과 | 2 |
| ○ 공 고 제 5 4 9 호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식 품 위 생 과 | 6 |
| ○ 공 고 제 5 5 7 호 |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안 전 총 괄 과 | 7 |

고 시

- | | | | |
|---------------|---------------------|-----------|----|
| ○ 고 시 제 3 1 호 |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 총 무 과 | 19 |
| ○ 고 시 제 3 2 호 |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 토 지 정 보 과 | 24 |
| ○ 고 시 제 3 3 호 |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 토 지 정 보 과 | 28 |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544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10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3. 3. 10.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10호선)
 - 명 칭 : 고잔동 379-24번지 일원(소1-10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고잔동 379-24번지 일원(소 1-10호선)
 - ※ 사업 전체 구간[B=10.0m, L=230.0m] 중 일부구간 선 보상 후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임.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9-24번지 일원
5. 보상시기 : 2023년 5월 중(예정)
6. 보상금 지급처 : 남동구청 도로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9-24번지 일대 4 필지
 -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영업보상 관련 별도 통보)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열람기간 : 2023. 3. 10. ~ 2023. 3. 26.

10.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 : 2023. 3. 27. ~ 2023. 4. 26.

- ②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도로과에 문의(☎032-453-2713)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목록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 계 (㎡)	잔여 면적	소 유 자			관계자			비고
					도로 내(㎡)	도로 외(㎡)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고잔동	409-40	답	165	165	-	165	-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76번길 22, *동*호(구월동, 동아아파트)	1	농업협동 조합중앙 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시화공단기업 금융지점)	근저당권	
2	고잔동	409-31	도로	11	11	-	11	-	주식 회사 대영 테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115(항동7가)	1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연 수지점)	근저당권	
3	고잔동	408-4	잡종지	639	639	-	639	-	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0, *동 *호(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	-	-	-	
4	고잔동	379-34	잡종지	2	2	-	2	-	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66, *동 *호(신림동, 대우신림2차푸르지 오)	1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인천논현지점)	근저당권	

□ 지장물 목록

조서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용도)	구 조/규 격	전체 수량	편입 수량	단 위	물 건 소 유 자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고잔동 409-40	강관 천막 (창고)	45	45.9	45.9	m ²	명진퍼니처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잔로51번길 46-1(고잔동)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76번길 22, *동*호(구월동, 동아아파트)	
		컨테이너 (창고)	5.0X3.0M	2	2	식					
2	고잔동 408-4	강관, 천막 (창고)	68.1	195.1	68.1	m ²	마당쇠환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08(고잔동)	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0, *동 *호(대치동, 한보미도맨션)	
		컨테이너 (사무실, 창고)	6X3+12X3	2	2	동					
		콘크리트 (옹벽)	-	3.8	22.5	m					
		강관,함석,방 진막(담장)	-	133	41	m					
		각파이프 목재(출입문)	출입문	6.7	6.7	m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549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3. 3. 24.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3. 3. 9. ~ 2023. 3. 23.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휴 게 음식점	2016- 0199605	장한왕만두	시**	남동구 장승로 25, 1층 118호 (만수동, 장승백이상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1-31	2023-03-24
휴 게 음식점	2017- 0200001	제이스컵 (Jay's Cup)	박**	남동구 예술로 126, 1층 123호 (구월동, 링크126)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1-29	2023-03-24
휴 게 음식점	2017- 0200055	세븐일레븐 간석퍼스트점	박**	남동구 경인로626번길 52, 1층일부(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3-01	2023-03-24
휴 게 음식점	2017- 0200222	꿀스커피	최** 정**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5번길 17, 1층 107호(논현동, 마스타프라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10-15	2023-03-24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3. 3. 23.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1

2023. 3. 9.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557호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10.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사항을 정비·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기금의 운용·관리 정비 : (안 제3조 ~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요건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맞게 개정 :

(안 제10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안전총괄과
- 연 락 처 : 전화 453-2312 FAX 453-2319

4. 참고사항

-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1]

의 건 제 출 서

- 조 례 명 :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 내용	찬성 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사항을 정비·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기금의 운용·관리 정비 : (안 제3조 ~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요건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맞게 개정 : (안 제10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을 “수입”으로,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안정적이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를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의 출납과 보관은 구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하되,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의무예치금액”을 말한다)은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6조제15호 중 “퇴거명령(이하 “대피명령 등”이라 한다)”을 “퇴거명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청장이 대피명령 등으로 인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지원할 때에”를 “제6조제15호에 따른 이주지원비”로, “실비
만”을 “실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을 “제6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촉직 위원 :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 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 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 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남동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노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 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안정적이고 이자율 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 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 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 수입----- ----- ----- -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시행령」----- ---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 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 ----- ----- ----- ----- ----- ----- ----- -----

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남동구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

-----.

② 기금의 출납과 보관은 구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하되,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의무예치금액”을 말한다)은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용·관리) ①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략)
1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6. , 17. (생략)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이 대피명령 등으로 인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지원할 때에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만 지원한다.

②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임차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14. (현행과 같음)
15. -----

퇴거명령-----

16. , 17.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 제15호에 따른 이주지원비-----
----- 실비를 -----.

② 제6조제15호에 따른 -----

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 ⑦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 ⑦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 2023 - 31호

통.반 구역조정 결정 고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23. 3. 9.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첨부문서 참조”

2023. 3. 9.

남 동 구 청 장

[첨부]

-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위한 -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계획

❖ 논현2동 관내 세대가 편중된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

반은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통은 2~8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2(통·반의 개편)

동장은 전출·입 등 변동사항에 따른 통·반의 세대수가 통·반의 획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정기준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통·반 확정 기준 적용
 - 반 :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통 : 2~8개 반으로 구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 가능

3 조정사유

- 관내 세대가 편중 된 과대 통·반 구역 조정
- 통·반 구역 조정을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 효율성 도모

4 조정내역

- 총괄내역

구 분	조 정 전		증 감		조 정 후	
	통	반	통	반	통	반
남동구	885	3,782	+1	+2	886	3,784
논현2동	48	219	+1	+2	49	221

- 조정 세부내역

-조정 전

구 분	조 정 전		관 할 구 역	세대수
	통	반		
논현2동	37	1	646-1, 646-2, 647-1, 647-2 647-3~6	272세대
		2	644-3, 644-4, 645-1, 645-2~3 645-4, 645-5~8	435세대
	소계			707세대

-조정 후

구 분	조 정 후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논현2동	37	1	646-1~2(부티크646,에코펠리스 원룸텔)	216세대
		2	645-1(에이스프라자-요양병원), 645-2 647-1(남동메디칼센터), 647-2(세중프라자), 647-3~6	109세대
		소계		325세대
	49	1	644-3, 644-4(두손지젤타워)	161세대
		2	645-5(논현포레오피스텔), 645-6~8, 645-3~4	221세대
		소계		382세대

통·반 구역 조정 현황

▷ 승인 일자 : 2023. 3. 9.

동명 구분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885	3,782	1	2	886	3,784	
구월1동	51	200	0	0	51	200	
구월2동	49	211	0	0	49	211	
구월3동	62	220	0	0	62	220	
구월4동	36	171	0	0	36	171	
간석1동	42	194	0	0	42	194	
간석2동	35	155	0	0	35	155	
간석3동	54	217	0	0	54	217	
간석4동	46	215	0	0	46	215	
만수1동	44	176	0	0	44	176	
만수2동	42	157	0	0	42	157	
만수3동	39	132	0	0	39	132	
만수4동	43	211	0	0	43	211	
만수5동	33	184	0	0	33	184	
만수6동	41	185	0	0	41	185	
장수서창동	32	121	0	0	32	121	
서창2동	53	183	0	0	53	183	
남촌도림동	44	193	0	0	44	193	
논현1동	46	248	0	0	46	248	
논현2동	48	219	1	2	49	221	
논현고잔동	45	190	0	0	45	190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32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남동구 [수산4지구, 논현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수산동 277-1번지 일원 등에 신설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9.

남 동 구 청 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좌 표	
	X(m)	Y(m)
	붙 임	
기 준 원 점 명	세계측지계좌표	
소 재 지	남동구 수산동 277-1번지 일원	
설 치 일 자	붙임참조	
표 지 재 질	붙임참조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신설(77점)	

붙임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별도첨부) 1부. 끝.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

연번	구분	기준점명	세계		소재지	설치일(관측일)	표지재질	비고
			X	Y				
1	지적도근점	8570	537199.64	175600.87	수산동 277-1	2022.12.7.	표철	
2	지적도근점	8571	537193.32	175685.01	수산동 597-107	2023.1.17.	표철	
3	지적도근점	8572	537184.52	175758.88	수산동 310-9	2022.12.7.	표철	
4	지적도근점	8573	537126.49	175787.98	수산동 345-5	2022.12.7.	표철	
5	지적도근점	8574	537122.01	175819.65	수산동 600-21	2023.1.17.	표철	
6	지적도근점	8575	537092.91	175856.37	수산동 345-9	2022.12.7.	표철	
7	지적도근점	8576	537097.92	175876.60	수산동 345-9	2023.1.17.	표철	
8	지적도근점	8577	537076.62	175899.82	수산동 345-9	2022.12.7.	표철	
9	지적도근점	8578	537075.59	175938.75	수산동 345-9	2022.12.7.	표철	
10	지적도근점	8579	537067.76	175979.31	수산동 345-9	2022.12.7.	표철	
11	지적도근점	8580	537115.91	175993.89	수산동 595-9	2022.12.7.	표철	
12	지적도근점	8581	537075.26	176032.01	수산동 595-35	2022.12.7.	표철	
13	지적도근점	8582	537039.38	176035.95	수산동 345-9	2022.12.7.	표철	
14	지적도근점	8583	537051.37	176098.16	수산동 595-44	2022.12.7.	표철	
15	지적도근점	8584	537074.25	176128.23	수산동 368-1	2022.12.7.	표철	
16	지적도근점	8585	537093.89	176170.58	수산동 370	2022.12.7.	표철	
17	지적도근점	8586	537083.73	176236.72	수산동 368-1	2022.12.7.	표철	
18	지적도근점	8587	537148.96	176293.68	수산동 375-3	2022.12.7.	표철	
19	지적도근점	8588	537086.45	176326.80	수산동 451-2	2022.12.7.	표철	
20	지적도근점	8589	536988.96	176269.24	수산동 475	2022.12.7.	표철	
21	지적도근점	8590	536953.95	176227.26	수산동 473-1	2023.1.17.	표철	
22	지적도근점	8591	536925.23	176171.78	수산동 산 48-7	2022.12.7.	플라스틱	
23	지적도근점	8592	536822.19	176104.55	수산동 산 48-2	2022.12.7.	플라스틱	
24	지적도근점	8593	536782.72	176057.48	수산동 산 48-1	2022.12.7.	표철	
25	지적도근점	8594	536829.88	176074.15	수산동 산 48-1	2022.12.7.	표철	
26	지적도근점	8595	536915.01	176065.82	수산동 492-2	2022.12.7.	표철	
27	지적도근점	8596	536889.18	176096.25	수산동 490	2022.12.7.	표철	

연번	구분	기준점명	세계		소재지	설치일(관측일)	표지재질	비고
			X	Y				
28	지적도근점	8597	536917.39	176125.95	수산동 600	2022.12.7.	표철	
29	지적도근점	8598	536959.28	176135.36	수산동 481	2022.12.7.	표철	
30	지적도근점	8599	536990.08	176055.19	수산동 600	2022.12.7.	표철	
31	지적도근점	8600	536978.26	176037.56	수산동 600	2022.12.7.	표철	
32	지적도근점	8601	536968.40	175959.51	수산동 598-5	2022.12.7.	표철	
33	지적도근점	8602	536938.56	175900.11	수산동 597-110	2023.1.17.	표철	
34	지적도근점	8603	536934.15	175828.46	수산동 597-110	2022.12.7.	표철	
35	지적도근점	8604	536896.66	175877.90	수산동 산55	2022.12.7.	표철	
36	지적도근점	8605	536875.39	175830.20	수산동 512-1	2022.12.7.	표철	
37	지적도근점	8606	536988.90	175744.43	수산동 338-12	2022.12.7.	표철	
38	지적도근점	8607	537064.24	175716.31	수산동 597-47	2022.12.7.	표철	
39	지적도근점	8608	537136.79	175671.93	수산동 319-1	2022.12.7.	표철	
40	지적도근점	8609	537130.79	175627.54	수산동 325-1	2022.12.7.	표철	
41	지적도근점	8610	537056.64	175851.52	수산동 352-8	2022.12.7.	표철	
42	지적도근점	8611	536998.00	175840.05	수산동 598-5	2022.12.7.	표철	
43	지적도근점	8612	536982.60	175913.33	수산동 354-2	2023.1.17.	표철	
44	지적도근점	8613	535052.81	176807.57	논현동 21-33	2022.12.9.	표철	
45	지적도근점	8614	534981.94	176823.15	논현동 24-2	2022.12.9.	표철	
46	지적도근점	8615	534935.08	176830.60	논현동 26-11	2022.12.9.	표철	
47	지적도근점	8616	534860.86	176844.01	논현동 28-2	2022.12.9.	표철	
48	지적도근점	8617	534783.97	176853.15	논현동 32-18	2022.12.9.	표철	
49	지적도근점	8618	534586.34	176549.21	논현동 685	2022.12.9.	표철	
50	지적도근점	8619	534550.95	176501.13	논현동 54	2022.12.9.	황동	
51	지적도근점	8620	534650.15	176505.77	논현동 51-2	2022.12.9.	플라스틱	
52	지적도근점	8621	534682.68	176521.94	논현동 산 12-6	2022.12.9.	표철	
53	지적도근점	8622	534743.23	176516.41	논현동 산 12-15	2022.12.9.	표철	
54	지적도근점	8623	534806.96	176506.17	논현동 산 12-13	2022.12.9.	표철	
55	지적도근점	8624	534842.30	176498.47	논현동 산 7-2	2022.12.9.	표철	

연번	구분	기준점명	세계		소재지	설치일(관측일)	표지재질	비고
			X	Y				
56	지적도근점	8625	534881.63	176475.04	논현동 산 12-2	2022.12.9.	표철	
57	지적도근점	8626	534902.50	176553.77	논현동 산 5-2	2022.12.9.	플라스틱	
58	지적도근점	8627	534921.59	176617.26	논현동 산6	2022.12.9.	플라스틱	
59	지적도근점	8628	534934.65	176652.84	논현동 산 5-1	2022.12.9.	플라스틱	
60	지적도근점	8629	534968.90	176693.30	논현동 산 5-9	2022.12.9.	표철	
61	지적도근점	8630	534983.30	176725.59	논현동 산 5-1	2022.12.9.	표철	
62	지적도근점	8631	535056.05	176760.33	논현동 산 5-1	2022.12.9.	표철	
63	지적도근점	8632	534910.16	176768.84	논현동 22-16	2022.12.9.	표철	
64	지적도근점	8633	534891.45	176747.21	논현동 530	2022.12.9.	표철	
65	지적도근점	8634	534862.13	176741.25	논현동 530	2022.12.9.	표철	
66	지적도근점	8635	534868.26	176715.91	논현동 38-6	2022.12.9.	표철	
67	지적도근점	8636	534883.46	176681.24	논현동 40-5	2022.12.9.	표철	
68	지적도근점	8637	534841.86	176672.28	논현동 36-5	2022.12.9.	표철	
69	지적도근점	8638	534793.89	176635.06	논현동 44-15	2022.12.9.	표철	
70	지적도근점	8639	534742.20	176655.57	논현동 34-46	2022.12.9.	표철	
71	지적도근점	8640	534708.74	176610.79	논현동 49-2	2022.12.9.	표철	
72	지적도근점	8641	534634.07	176574.52	논현동 530	2022.12.9.	표철	
73	지적도근점	8642	539038.64	172866.23	구월동 1335-5	2022.12.13.	표철	
74	지적도근점	8643	538981.21	172862.62	구월동 1338-4	2022.12.13.	표철	
75	지적도근점	8644	538926.46	172856.53	구월동 1338-4	2022.12.13.	표철	
76	지적도근점	8645	538869.60	172842.92	구월동 1429	2022.12.13.	표철	
77	지적도근점	8646	538808.64	172827.73	구월동 1429	2022.12.13.	표철	

공 고

남동구 고시 제2023-3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9.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08 (만수동)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66번길 30 (간석동) 외 6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3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34-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08 (만수동)	2009.07.06.	백제, 고구려, 신라시대에 사용되었던 인천의 옛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23.03.0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매소홀로 1008 기초구간에위치하여1008을 건물번호로부여	남동종합문화 체육광장 4호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34-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12 (만수동)	2009.11.16.	장승로 남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23.03.0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승남로 12 기초구간에위치하여12를 건물번호로부여	남동종합문화 체육광장 3호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34-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11 (만수동)	2009.11.16.	장승로 남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23.03.0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승남로 11 기초구간에위치하여11을 건물번호로부여	남동종합문화 체육광장 2호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66번길 30 (간석동)	2023.03.09.	건축물대장 말소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65번길 14-20 (구월동)	2023.03.09.	건축물대장 말소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65번길 14-16 (구월동)	2023.03.09.	건축물대장 말소	
4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5번길 5-1 (간석동)	2023.03.09.	건축물대장 말소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5번길 5 (간석동)	2023.03.09.	건축물대장 말소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122 (고잔동)	2023.03.09.	건축물대장 말소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45번길 7 (만수동)	2023.03.09.	건축물대장 말소	